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14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원택·주철현·문대림

윤준병 • 문금주 • 임호선

서삼석 • 이병진 • 어기구

정준호 · 조인철 · 송옥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·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.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,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.1%에 그치고 있으며,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.1%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 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 립하도록 하며,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 고,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·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,수량,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·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,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요구를 보장하고,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1호및 제1호의2, 제7조의2,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).

주요내용

- 가.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(안 제2조의2).
- 나.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의2제2항제3의2호 신설).
- 다. 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 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의3제3호).
- 라.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- 마.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

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.

- 사.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「농어업재해대 책법」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.
- 아.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(안 제7조의2 신설).
- 자.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,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 야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차.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(제11조의8 후단 신설).
- 카.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 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"농업재해"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.
- 1의2. "어업재해"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 재해를 말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"5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

제2조의3제3호 중 "손해평가의 방법"을 "손해평가 방법(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포함되어야 한다"를 "포함되어야 하며,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제5조제2항 중 "보험목적물"을 "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 토를 실시하고, 보험목적물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,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"를 "제2조의3제1호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.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

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교육 등) ①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험

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2(보험사업자의 의무)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다)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다)"를 "재해보험사업자"로, "객관적이고"를 "심 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"로 한다.

제11조제5항 중 "손해평가인이"를 "손해평가인의"로, "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"을 "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"로, "이상"을 "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, 수량, 재배방식등의 내용으로"로 한다.

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.

제19조제1항 전단 중 "일부를"을 "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"로

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농어업재해"란 농작물·임	1. "농업재해"란 「농어업재해
산물·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	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	<u>농업재해를 말한다.</u>
해・조수해(鳥獸害)・질병 또	
는 화재(이하 "농업재해"라 한	
다)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	
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	
•질병 또는 화재(이하"어업	
재해"라 한다)를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<u>1</u> 의2. "어업재해"란 「농어업재
	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
	른 어업재해를 말한다.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	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
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	수립·시행) ①
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	
업재해보험(이하 "재해보험"이	
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	
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	
회 또는 「수산업・어촌 발전	
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	
앙 수산업 • 어촌정책심의회의	

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<u>5년</u>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③ ~ ⑥ (생 략)

- 제2조의3(재해보험 등의 심의)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(이하 "재보험"이라 한다)에 관한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3조에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・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<u>손해평가의 방법</u>과 절차에 관한 사항

<u>3년</u>
<u>.</u>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
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
관한 사항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3(재해보험 등의 심의)
·.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손해평가 방법(농업재해 및

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

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다)--

4. ~ 6. (생략)

- 제3조(농업재해보험심의회) ① ~ ③ (생략)
 -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 4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
- ⑤ ~ ⑧ (생 략) 제5조(보험목적물) ① (생략)
 -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, 다.

제6조(보상의 범위 등) ①재해보 제6조(보상의 범위 등) ①-----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

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농업재해보험심의회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4
포함되어야 하며, 제4호에 해당
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
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
<u>여야 한다</u> .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
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
<u>라</u>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5조(보험목적물) ① (현행과 같
<u>⇔</u>)
②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

보험목적물-----

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, 피해 정 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2조	스의3제1호에	의한	심의	결
과에	따라			
	 			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 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「농어 업재해대책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 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7조의2(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 대책교육 등) ① 정부는 재해보 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

<신 설>

제9조(보험료율의 산정) ① <u>제8조</u> <u>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</u> <u>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</u> 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대책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 에게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 다.

-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 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을 위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2(보험사업자의 의무) ①
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
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
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
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
한다)는 농어업재해보험가업자
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
한다.

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험료율의 산정) ① <u>재해</u> <u>보험사업자</u>----

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 다)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11조(손해평가 등) ① ~ ④ (생략)
 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·⑦ (생 략)

제11조의8(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)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 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 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

	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
	<u> 따라 객관적이고</u>
	1.・2. (현행과 같음)
	② (현행과 같음)
제	11조(손해평가 등) ① ~ ④ (현
	행과 같음)
	⑤
	손해평가인의
	<u>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</u>
	전문성 향상을 위하여
	이상 농어업재해보험
•	대상 품목의 품종, 수량, 재배방
-	<u>식 등의 내용으로</u>
	⑥·⑦ (현행과 같음)
	11조의8(손해평가에 대한 이의
	신청) ①

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19조(재정지원) ① 정부는 예산 지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운영비"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25조의2(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 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

	<u>이 경우 보험가입</u>	<u>가</u>
	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	
	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	<u>손</u>
	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	<u>수</u>
	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	<u>별</u>
	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	야
	한다.	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1	19조(재정지원) ①	
	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	가
	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	의
	<u>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</u>	용.
	의 일부를	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	25조의2(농어업재해보험사업	의
	관리) ①	

행한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손해평가인력의 육성
- 5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

 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

 문성 제고
- 5. (현행과 같음)
- ② ③ (현행과 같음)